

구분	고시	조회수	4
제목	Flow-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의 급여기준		
관련근거	고시 제2021-332호(치료재료)		
게시일자	2021-12-28		

Flow-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

- 다 음 -

가. 급여대상

- 1) 직경 10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
- 2) 직경 10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아래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

- 아 래 -

- 가)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
- 나) 방추형 뇌동맥류
- 다)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

나. 급여개수 : 1개

다만,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

다.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

(2022.1.1.시행)

■ 고시 개정 사유: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, 급여대상 확대(직경 15mm → 10mm)

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: 고시 제2014-191호(2014.11.1.시행)

■ 변경 전 고시내용

Flow-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(Embolization Device)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.

- 다 음 -

가. 적응증

- (1) 직경 15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
- (2) 직경 15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다음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

-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
- 방추형 뇌동맥류
-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

나. 인정개수 : 1개

다만,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.

다.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.


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